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9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이선주 의원 등 6명(박정환, 강한곤, 손범구, 서보영, 도하석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
- 회부일자: 2024. 11. 6.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(2024. 11. 29.)

2. 제안이유

- 공공건축의 계획 단계부터 조사, 설계, 시공, 유지관리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,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공건축의 누수 등 불량시공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로 건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설치 및 기능을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
- 자문대상, 자문방법을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- 자문결과의 제출, 의견청취 등 규정(안 제5조 ~ 제6조)
-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
 - 「건축기본법」 제3조
 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11. 6.~11. 17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불량시공을 방지하여 우수한 품질로 건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의 계획, 설계, 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, 자문대상, 방법,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구에서 건축하는 50억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을 설치·운영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완공전 품질자문을 통한 하자없는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관계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